

- 2024년도 「여수시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」 -

# 분말활성탄 구매 규격서

2024. 2.



## 약품 구매 규격서

### 1. 적용범위

본 규격서는 여수시도시관리공단 환경자원사업소 (이하 “발주처”)에서 약품 공급업체(이하 “수급인”)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할 약품에 대하여 규정한다.

### 2. 목 적

본 규격서는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저감 및 중금속 흡착시설에 사용하기 위한 약품으로 본 규격서가 제시한 품질의 제품을 구매하여 소각시설 가동을 원활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.

### 3. 납품위치

전라남도 여수시 진달래길 310-157 여수시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

### 4. 납품기한

계약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“발주처”의 운영사정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될 수 있고, “수급인”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, 다음해 연간 계약 체결 시까지 상호 협의 하에 연장할 수 있다.

### 5. 납품장소

여수시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내에 공급약품 지정장소

### 6. 납품방법 및 절차

- 가. “발주처”의 계량시설을 이용하여 중량을 확인 받은 후, 각 품목별 지정장소에 직접 하역 하여야 한다.
- 나. “발주처”는 “수급인”에게 문서(FAX) 또는 유선으로 납품 요구할 수 있으며, “수급인”은 납품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주간 (09:00 ~ 16:00)에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. 그러나, “각 시설”의 운영상 긴급을 요하는 “발주처”의 납품 요구시 납품일, 납품시각에 관계없이 “각 시설”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납품하여야 한다.

### 7. 납품약품 및 규격, 예정수량

구분	약품명	규 격	예정수량 (kg)	비고
1	분말 활성탄	- 수분함량(%) : 10%이하 - 회 분 량(%) : 15%이하 - 요오드흡착력(mg/g) : 900이상 - 입도(325Mesh체 통과율): 90%이상 - 충전 밀도(g/ml) : 0.5이하	17,600	1회 납품량 : 약 2~3톤 (500kg톤백 사용)

**8. 품질보증**

- 가. “수급인”은 납품한 약품이 “제품규격서”상의 품질을 만족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**최초 납품된 약품은 시료채취 후 공인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분석된 공인기관 성적서를 제출**하여야 한다.
- 나. 매 납품시의 품질분석은 “수급인”이 제출한 계량전표 및 자체 시험 성적서 등에 의하며, “발주처”가 적격여부를 판정한다.
- 다. 납품시의 검수와 관련된 일체비용은 “수급인”이 부담하며, “발주처”의 공인분석기관에 요청한 검수도 “수급인”이 부담한다.
- 라. 납품약품 사용 중 관련설비 운영 및 관련설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“발주처”는 별도로 공인분석기관에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시험할 수 있으며 품질상 문제 발생 시 “수급인”은 다음 “11. 규격미달 물품에 대한 조치”에 기술된 사항에 응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한 일체 비용은 “수급인”이 부담해야 한다.

**9.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**

- 가. “수급인” 또는 “수급인”의 고용인이 납품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나 상해 또는 이들이 타인에게 재산, 인명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“수급인”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
- 나. “수급인”은 납품과 관련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법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,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, 이를 불이행하여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는 “수급인”이 책임을 져야한다.

**10. 고용원 및 운반차량 관리**

- 가. “수급인”은 각 약품의 납품에 차질이 없도록 운반차량을 보유(임대차계약 등도 인정)하고 있어야 하며, 납품절차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 고용원(운전원) 등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한다.
- 나. “수급인” 또는 “수급인의 고용인”이 납품과 관련된 모든 행위(시료채취 및 입회행위 등 포함)는 “수급인”이 행한 것으로 본다.

**11. 규정품질 미달 및 납품지연에 따른 조치**

- 가. 납품된 약품이 본 규격서 제8조에 규정된 품질시험 결과 품질규격에 미달된 경우, “수급인”은 납품된 차량에 대하여 금액을 청구할 수 없으며, 품질규정에 미달된 약품으로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“발주처”에게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- 나. 납품기일 지연이나 규격미달 물품이 납품될 경우 계약불이행으로 보고 “발주처”는 불임과 같이 주의, 경고, 계약해지 및 익년계약시 배제 행정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.

계약불이행 횟수	1회	2회	3회
납품지연	주 의	경 고	계약해지 및 익년계약시 배제
물품분석결과 규격미달 시(납품기준 등)	경 고	계약해지 및 익년계약시 배제	-

**12. 사전조사 및 주지의무**

- 가. “수급인”은 계약 전에 동 입찰 및 납품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,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(숙지하지 못하여) 발생한 손해는 “수급인”의 책임으로 한다.
- 나. 동 규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13. 안전관리**

- 가. “수급인”은 최초 납품시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에 관련된 품목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나. 약품의 납품시 주변을 오염시켜서는 안되며, 주변 오염물질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“수급인”에게 있다.
- 다. 약품의 납품 및 입고시 제반 안전조치를 다하여야 하며,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“수급인”에게 있다.
- 라.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수급인이 협의하여 처리한다.

**14. 대금지불**

“수급인”은 매월 초 전월 납품량에 대하여 정산, 청구함을 원칙으로 하며, “발주처”의 물품검수를 완료한 후 “수급인”의 요청에 의해 납품실적에 따라 익월 말 정산, “발주처”의 대금지급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.

**15. 기 타**

- 가. “수급인”은 각 약품의 납품 등을 제3자에게 재하도급하거나, 이면계약, 위임, 위탁 등을 할 수 없다. 적발 시 계약불이행으로 보고 “발주처”는 계약해지 및 익년계약시 배제 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나. 약품과 관련된 자료제공을 “발주처”가 요청할 경우 “수급인”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